

제천시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0

제출년월일 : 1997. 10.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사유

각종 민원을 발급함에 있어 민원서류 발급시 증지를 부착 소인한후 공인날인을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발급 추진으로 민원인의 편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증계기로 발급 가능한 민원사무를 확대 함으로서 민원인의 편리도모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 하고자함.

2. 주요골자

제천시 공인조례 제16조(별표2)의 인증계기 사용민원 사무표에 “기타 인증계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신설

3. 관계법령

제천시 공인조례 제16조

제16조(인증계기 날인대상 사무)인증계기에 의하여 발급가능한 민원 사무표는 “별표2”로 한정한다

- 불임 : 1. 제천시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조표

제천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천시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인증계기사용 민원사무표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번호	인증계기사용민원사무명	발급기관	비고
13	기타 인증계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	해당실과.사업소 읍·면·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 175 -

현 행				개 정 안			
번호	인증계기사용민원사무명	발급기관	비 고	번호	인증계기사용민원사무명	발급기관	비 고
1-12	(생 략) (신 설)			1-12 13	(현행과 같음) 기타인증계기사용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	해당실과, 사업소, 읍,면,동	